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미경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62호
- 나. 제 안 자 : 권미경의원(찬성의원 14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1월 28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령의 기준에 따라 확대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4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타당성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 법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지정·고시, 정관, 임직원의 인사, 예산, 재정지원, 지도·감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이하 “시”)에는 현재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14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시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2015년 7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면, 지도·감독, 평가, 경영진단 관련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임.

- 특히, 이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설립 타당성, 임원의 해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는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6월 서울디지털재단을 포함한 2개 신규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모두 5차에 걸쳐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참고자료 1).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횟 수	일 시	안 건
제1차	'15. 6. 4	○위원 위촉 및 신규 재단(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설립 검토
제2차	'15. 6. 12	○신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심의·의결(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제3차	'15. 9. 10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심의·의결
제4차	'15. 12. 17	○ '15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 '16년도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제5차	'16. 2. 3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의결

- 현재 심의위원회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3), 시의회 추천 위원(3), 각계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 위원(7)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안 제4조)

- 안 제4조는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가운데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로 평가됨.
- 시가 당초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작은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은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확대하더라도 당초 시가 기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위원 정수의 확대에 따라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해 각종 심의·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타당성부터 임원의 임면, 경영진단과 실적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성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안 제4조와 같이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확대해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는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자료 1〉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16. 2월 기준)

연번	성명	사진	주요경력	비고
1	류 경 기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행정국장 	당 연 직 (3)
2	장 혁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3	김 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 서울시 조직담당관 	
4	김 금 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그린에너지월드 대표이사 ○ (현)(재)한국청소년재단 운영이사 ○ (현)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시 의 회 추 천 (3)
5	김 영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 (현)대한 신용채권관리(주) 대표이사 ○ 법무법인 아주 법무실장 	
6	홍 성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주식회사 KR 대표이사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사 ○ (주)케이피엔알 경영총괄 이사 	위 원 장 추 천 (7)
7	강 을 영 (법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법무법인 참 변호사, 노무사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정책 및 조사담당 ○ 미디어오늘 기자 	
8	박 한 준 (경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팀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정책연구팀장 ○ 공공기관 아웃소싱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9	윤 태 범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추 천 (7)
10	이 상 근 (경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세빛섬 감사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 좋은 예산센터 이사 	
11	김 애 란 (노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심의위원·이의신청위원 ○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장 	
12	선 현 주 (경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선랩(주) 대표 ○ (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현)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비상임이사 	
13	윤 정 향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현)한국YWCA 정책위원(돌봄노동 관련) ○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위원 	

〈참고자료 2〉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3〉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14개)

구분	서 의 료 유 원	서 연 구 유 원	서 울 산 흥 유 원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세 중 문 화 회	서 울 여 성 재 단	서 울 시 복 지 재 단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02. 1. 10.	'03. 12. 31.	
조 직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0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본부 6실 2센터 공공투자 관리센터	2실 5본부 27팀	2부문 3실 5부 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3본부 1실 14팀 9예술단	3실 7팀	1보좌관, 1센터,1지원단, 2실3본부	
정원내	정원	1,185명	108명	240명	292명	351명	92명	
	현원	1,086명 (무기계약 55명 포함)	101명	196명 (무기계약 73명 포함)	287명 (별도정원 3명 운영)	281명	47명	90명
정원외	무기	무기계약직 정원 내포함	-	무기계약직 정원 내포함	24명	32명	29명	42명
	기간제	221명	190명 (무기계약 20명 포함)	27명	126명	150명	14명	23명
	단시간	-	7명	15명	-	-	-	-
이사	정원	9~13명	12명	10명	8명	15명	20명	10명
	현원	10명	12명	8명	8명	14명	10명	8명
감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현원	1명	2명	2명	1명	1명	2명	2명
'16 예산	본 예산	1,367억원	289억원	1,357억원	1,553억원	434억원	119억원	199억원
시출연금	~'15 (누적액)	300억원	2,182억원	2,258억원	3,467억원	3,724억원	698억원	1,861억원
	'16	182억원 (민간이전)	205억원	570억원	190억원	239억원	53억원	220억원 (기금포함)
주요 사업	-합리적병원운영 -공공의료 중심 병원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	-연구 사업 · 자체 과제 · 수탁 과제 · 협약 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일자리 mismatch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지원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R&D,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애니메이션산업, IT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 지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 동력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여성역량강화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화활동 -서울 여성플라자 운영관리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미래형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복지 활성화 -민간네트워크 확충 -정책 및 모델 연구개발 활성화	

구분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사)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목적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 예술활동 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고양, 시민자원봉사 활동 지원·육성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산업 진흥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설립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04. 3. 15.	'05. 6. 1.	'06. 1. 18.	'08. 12. 16.	'09. 1. 8.	'15. 3. 12.	'08. 2. 4.	
조직	1위원회, 2실, 4본부, 1극장, 14팀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1국 3부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	1사무국 2부	1국 3팀	1본부 1실 7팀	
정원내	정원	110명	144명	24명	152명	8명	15명	57명
	현원	106명	127명	24명	99명 (무기계약 12명 포함)	5명	14명	45명 (무기계약 1명 포함)
정원의외	무기	20명	5명	-	무기계약직 정원 내포함	-	-	-
	기간제	33명	-	10명	55명	-	3명	58명
	단시간	57명	-	1명	30명	-	-	-
이사	정원	15명	9명	25명	15명	11명	11명	13명
	현원	8명	9명	22명	11명	11명	11명	7명
감사	정원	2명	1명	2명	2명	2명	2명	3명
	현원	-	1명	1명	2명	2명	2명	1명
'16 예산	본 예산	318억원	188억원	26억원	460억원	127억원	23억원	193억원
	추경예산	-	-	-	-	-	-	-
서울연구비	~'15 (누적액)	1,687억원	1,086억원	185억원	1,063억원	870억원	23억원	100억원 ('08 1차 70, 2차 30) 지분 : 48.14%
	'16	122억원	117억원	25억원	235억원	101억원	23억원	-
주요사업	-예술창작활성화 -예술교육 사업 -문화도시 생활 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문화소통 및 정책 연구	-공익목적 공연-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 사업 -음반 녹음, 발매	-자치구센터, 시민, 풀뿌리 단체 등 성장센터 -소통협력지원 통한 플랫폼센터 -조직경쟁력 강화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운영 -시민디자인 연구 -시민서비스 디자인사업 -디자인 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사업	-대학분야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 분야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 평생교육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 등(MICE) 관련 사업	